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검사업무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및 지방항공청의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검사관 임명 등

제3조(검사관의 요건)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서 정한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1. 항공분야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 전문교육기관, 항공훈련기관 관련 업무경력 또는 항공종사자 자격관리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를 검사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관 임명 및 신분증 발급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발급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검사관 교육)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소속 검사관의 임명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검사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32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제1호의 초기교육훈련 이수자를 대상으로 검사업무 실무처리에 필요한 노하우(know-how) 등을 전수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교관의 업무시범 및 관찰 또는 교관 감독하의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진행되는 32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검사관 임명 후 검사관의 기량유지, 전문성 강화 및 안전저해 사례 공유 등을 위해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6시간 이상의 교육(항공안전감독관 정기교육훈련을 포함한다). 다만, 검사관으로 임명된 해당 년도에는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재자격부여교육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정기교육훈련 미이수 등으로 검사관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검사관의 자격이 상실된 사람(검사관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한한다)에게 검사관 임명 및 신분증을 다시 발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1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 ② 제1항에서 정한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교관의 자격) ① 직무교육훈련을 제외한 교관의 자격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국내외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자
 3. 국내외 항공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자
 4. 국내외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장비제작사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자
- ② 소속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1항에 따른 교관의 자격을 갖춘 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경력과 자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교관을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6조(검사관의 의무) ① 검사관은 전문교육기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검사대상기관의 업무에 가능한 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검사관은 검사에서 얻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검사관은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조(지정심사 등) ①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라 신규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심사로서, 서류심사로서 신청서에 첨부된 내용을 심사하고, 현장 확인심사로서 교육시설 및 장비 등을 심사한다.

②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심사 시 해당 교육기관이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가를 심사한다.

③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변경심사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현장 확인심사는 필요시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와 보고) 심사를 실시한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심사보고서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서의 교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의 결과가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정서 및 훈련운영기준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교육규정 1부를 간인하여 첨부한다.

② 전문교육기관 훈련운영기준의 변경심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되, 변경된 사항만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4장 검사절차 등

제10조(검사계획의 수립) ① 지방항공청장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다음 연도의 연간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검사활동의 중복·편중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사의 시기·대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의 구분 등) 제10조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검사 : 연 1회 전문교육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지도·감독
2. 수시검사 :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및 각종 진정 등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서류 또는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지도·감독

제12조(검사반의 편성) 지방항공청장은 검사반을 편성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검사반은 검사반장과 검사관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3조(검사의 실시 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사 수행 시 세부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검사일 7일 전까지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검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관은 검사시작 전에 관계직원에게 검사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목적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표에 의거하여 검사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사관은 검사 중 규정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결과와 보고) ① 검사반장 또는 검사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표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분야별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사항 및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검사반장 또는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보고 후 필요시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충분한 조치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시정지시 :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선권고 : 안전을 위해 개선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3. 현장시정 :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우

- ④ 검사반장 또는 검사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에 대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결과를 확인하고, 조치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다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토록 한 사항에 대해 전문교육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검사반장 또는 검사관은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의 조치사항 확인란에 처리결과를 기록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처분 등) 지방항공청장은 제14조에 따른 검사 결과 관계자가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항공종사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결과 기록유지) 검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및 수검자의 조치결과 확인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증진 활동 등

제17조(안전지도 등) 지방항공청장은 검사 활동을 통해 수집된 안전정보를 분석하고 전문교육기관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지도, 정보공유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전문교육기관 간 안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 위원장은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 1. 전문교육기관 검사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 2. 전문교육기관 최고 안전관리자
 - 3.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관련 전문가로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자
- ② 안전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1. 전문교육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2.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3. 전문교육기관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협의체 회의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휘·감독할 수 있다.

- 1.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 2.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항
 - 3.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감독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지방항공청장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감독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익년 1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1. 정기·수시검사 등의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
 - 2.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결과
 - 3.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및 시설·장비 현황
 - 4. 비행훈련용 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유지·관리 및 보험가입 현황
 - 5. 전문교육기관 교육 입과·수료생 현황
 - 6.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 검사 중 발생한 특이사항 등
- ③ 지방항공청장은 위임업무 수행 중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항공안전법령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0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